

의안번호	2213355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5.9.30.
추 계 번호	25D537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법조 위원을 현행 3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0만원, 2031년 175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25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 (안 제41조의2)	위원 증원분	5	5	5	5	5	—	—
	회의 횟수	2	1	2	5	1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추가재정소요	3.50	1.75	3.50	8.75	1.75	19.25	3.85

주 1. 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 인원은 12명(대법관회의 추천 대법관 1명, 대법관 아닌 법관 2명 제외)이지만,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므로 추천위원 증원분 5명만 추계의 대상으로 한 것임

2. 회의횟수는 임기만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회의횟수를 각 1회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항)	의무규정
		위원 중 8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함(안 제3항제8호)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비법조 위원 증원(3명→8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증원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 제41조제2항1)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었으며, 추천위원회별 회의횟수는 각 1회임

[표 2] 추천위원회 개최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회)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대법관 후보자	2	2	1	1	3	9
추천위원회 회의횟수	2	2	1	1	3	9

- 본 추계에서 기존 추천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천위원회별로 회의 횟수는 1회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회의참석수당은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²⁾과 그동안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회의 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1)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 제25조의3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부칙에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추천위원회의 비법조 위원 증원분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 13명 중 2027년 2명, 2028년 1명, 2029년 2명, 2030년 5명, 2031년 1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비법조 위원을 현행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50만원, 2031년 175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25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임기만료 대법관		2	1	2	5	1	—	—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 (안 제41조의2)	위원 증원분	5	5	5	5	5	—	—
	회의 횟수	2	1	2	5	1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
	추가재정소요	3.50	1.75	3.50	8.75	1.75	19.25	3.85

주 1. 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 인원은 12명(대법관회의의 추천 대법관 1명, 대법관 아닌 법관 2명 제외)이지만,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므로 추천위원 증원분 5명만 추계의 대상으로 한 것임

2. 회의횟수는 임기만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회의횟수를 각 1회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원 소속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